

1. 개정이유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
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
정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
성별 간 차별 해소(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
일부개정령안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목 “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”를 “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 및 제3호 중 “여성종업원”을 각각 “종업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

및 횟수(제3조 관련)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	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		
	매독검사	HIV검사	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
1.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	1회/6개월	1회/6개월	1회/6개월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에 따른 유흥접객원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
3.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
4.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 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 업장에 종사하는 사람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